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43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서천호 · 김예지 · 김선교  
정성국 · 최보운 · 김용태  
조정훈 · 우재준 · 김재섭  
임종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낙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낙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낙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

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낙시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① · ② (생략)<br><u>&lt;신설&gt;</u> | 제9조(낙시인 안전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u>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 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 |
| <u>&lt;신설&gt;</u>                               | ④ <u>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낙시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u>                                                                                 |
| 제55조(과태료) ① · ② (생략)<br><u>&lt;신설&gt;</u>       | 제5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u>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br>-----                                                                                                                                     |

|                                                            |                          |
|------------------------------------------------------------|--------------------------|
|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br>·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br>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br>-----<br>-----. |
|------------------------------------------------------------|--------------------------|